

의안번호	2212463
의 퇴 인	양부남의원
회 답 일	2025.10.30.
추계번호	25D4628
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14억 4,800만원 등 향후 5년간 656억 3,800만원(연평균 131억 2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평균
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(안 제7조)	21,448	21,877	22,312	-	-	65,638	13,128

주: 본 추계 결과는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의 공중화장실에 우선하여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소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은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의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은 2025년 1월 기준 78,183개소이며, 이 중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내 공중화장실은 24,263개소(31%)임

[표 2] 공중화장실등 장소별 현황

(단위: 개소)

공공용 시설	교통시설	관광·체육 시설	상업시설	주유소 충전소	교육연구시설			계
					소계	공립	사립	
27,837	2,950	14,305	9,958	9,062	14,071	12,611	1,460	78,183

자료: 행정안전부

-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에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3년간 3분의 1씩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수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단가를 곱하여 산출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24,263개소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분의 1씩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2027년 8,088개소, 2028년 8,088개소, 2029년 8,087개소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7월 기준, 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1.9	2.0	2.0	2.0	2.0	2.0

-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단가는 최근 시스템을 설치한 3개 지방자치단체 (도봉, 노원, 마포)의 개소당 평균 설치비용 2,504천원²⁾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
- 추계 결과,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내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14억 4,800만원 등 향후 5년간 656억 3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개소(a)	8,088	8,088	8,087	-	-	24,263
시스템 설치 단가(b)	2.7	2.7	2.8	-	-	-
추가재정소요(a×b)	21,448	21,877	22,312	-	-	65,63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관광·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의 공중 화장실에 우선하여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실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소 수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2)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6개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총 1억 9,029만원 소요
190,292천원÷76개소=2,504천원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